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13호 2022. 2. 22.(화)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20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2-2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20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0

남해군 공고 제2022-210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11

남해군 공고 제2022-225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남해군 공고 제2022-253호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남해군 공고 제2022-254호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9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가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30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08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 - 20호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궤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 1. 위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 2. 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 38,802㎡
  - 군계획시설(궤도) : 14,236㎡
- 3. 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 4. 관련도면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클라인 도이치랜드 :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궤도)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6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38,8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클라인 도이치랜드 개발진흥지구	○신설 A=38,802㎡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신규로 지정 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1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38,8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클라인 도이치랜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38,802㎡	○ 산림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형 휴식·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38,802	100.0		
I.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16,381	42.2	
	근린생활시설	6,527	16.8	주차장 포함
	트리하우스	1,258	3.3	
	놀이시설	3,587	9.2	
	코스터	1,676	4.3	
	코스터승강장	203	0.5	
	모노레일(궤도)	3,130	8.1	군계획시설(궤도) 중복
II. 공공시설 용지	소계	8,922	23.0	
	진입도로	4,617	11.9	
	주차장	3,213	8.3	
	단지내도로	961	2.5	
	카트주차장	131	0.3	
III. 녹지용지	소계	13,499	34.8	
	조성녹지	1,554	4.0	
	원형녹지	11,945	30.8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1	삼동면 물건리 380-2	삼동면 물건리 산84-1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64	소로2-112	소로1-1	일반 도로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	○신설 -B = 10m, L = 271m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	소로1-2	○신설 -B = 10m, L = 64m	○ 클라인 도이치랜드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삼동면 물건리 산93-3번지 일원	-	중)3,213	3,21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신설 (A=3,213m <sup>2</sup> )	○ 클라인 도이치랜드 및 독일마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	I	16,381	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6,527	근린생활시설
			I-2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1,258	트리하우스
			I-3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787	놀이시설
			I-4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800	놀이시설
			I-5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1,676	코스터
			I-6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203	코스터승강장
			I-7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3,130	모노레일 군계획시설(케도)중복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II	1,092	I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961	단지내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31	카트주차장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III	13,499	III-1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516	조성녹지
			III-2	삼동면 물건리 산84-15번지 일원	1,038	조성녹지
			III-3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7,183	원형녹지
			III-4	삼동면 물건리 산84-6번지 일원	2,929	원형녹지
			III-5	삼동면 물건리 산63번지 일원	455	원형녹지
			III-6	삼동면 물건리 산86번지 일원	1,378	원형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 이	• 6층이하
		배 치	• 도면참조
놀이시설 및 트리하우스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제6호 유원시설업,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16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조
모노레일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16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1	용도	지정용도	• 단지내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II-2	용도	지정용도	• 카트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3) 녹지용지

도면표시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III-2	용도	지정용도	• 조성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III-3 III-4 III-5 III-6	용도	지정용도	• 원형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신설	1	궤도	삼동면 물건리 산84-6	삼동면 물건리 산84-6	-	1,852 (830)	14,236 (3,771)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 )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궤도	○신설 A=14,236㎡	○ 남해군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과 관광·레저·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궤도 시설을 신설함



남해군 고시 제2022 - 2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05번길 14 외 18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86-36 외 1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55-860-3642~364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부 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서평리 718-1, 산11-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05번길 14	202201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225-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100번길 44-5	20220126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산80-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탐동로 108-8	20220124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탑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7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916	20220120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162-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화방로349번길 22	20220118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158-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55-65	20220118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8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92-5	20220118	행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7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122번길 73-11	20220110	옥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9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16번길 85	2022010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0-19	20220107	행정리를 이용.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오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969-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0번길 49	2022010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96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0번길 47	2022010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8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495번길 14	2022010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45, 남면 덕월리 646-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42번길 34-13	20220106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5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83	20220105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8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11-11	20220105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족리 82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424-32	20220105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프츠포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440, 144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668번길 51	20220105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4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60	20220103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변 경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95-3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95-36	20220126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변경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43번길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43번길 2-1	20220119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 - 20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영0	주 소	사천시 한내로 00
	소하천명	식포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창선면 가인리 785번지(615-92번지)		
	면적	3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2. 2. 8.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2 - 210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96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어류	미조 미조	20,000	2022.02.09 2032.02.0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답하이촌계외 1명	19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7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어류	미조 미조	30,000	2022.02.09 2027.02.08 (5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4번길 17-10	한수만외 6명	332호 재개발

※ '21/22년 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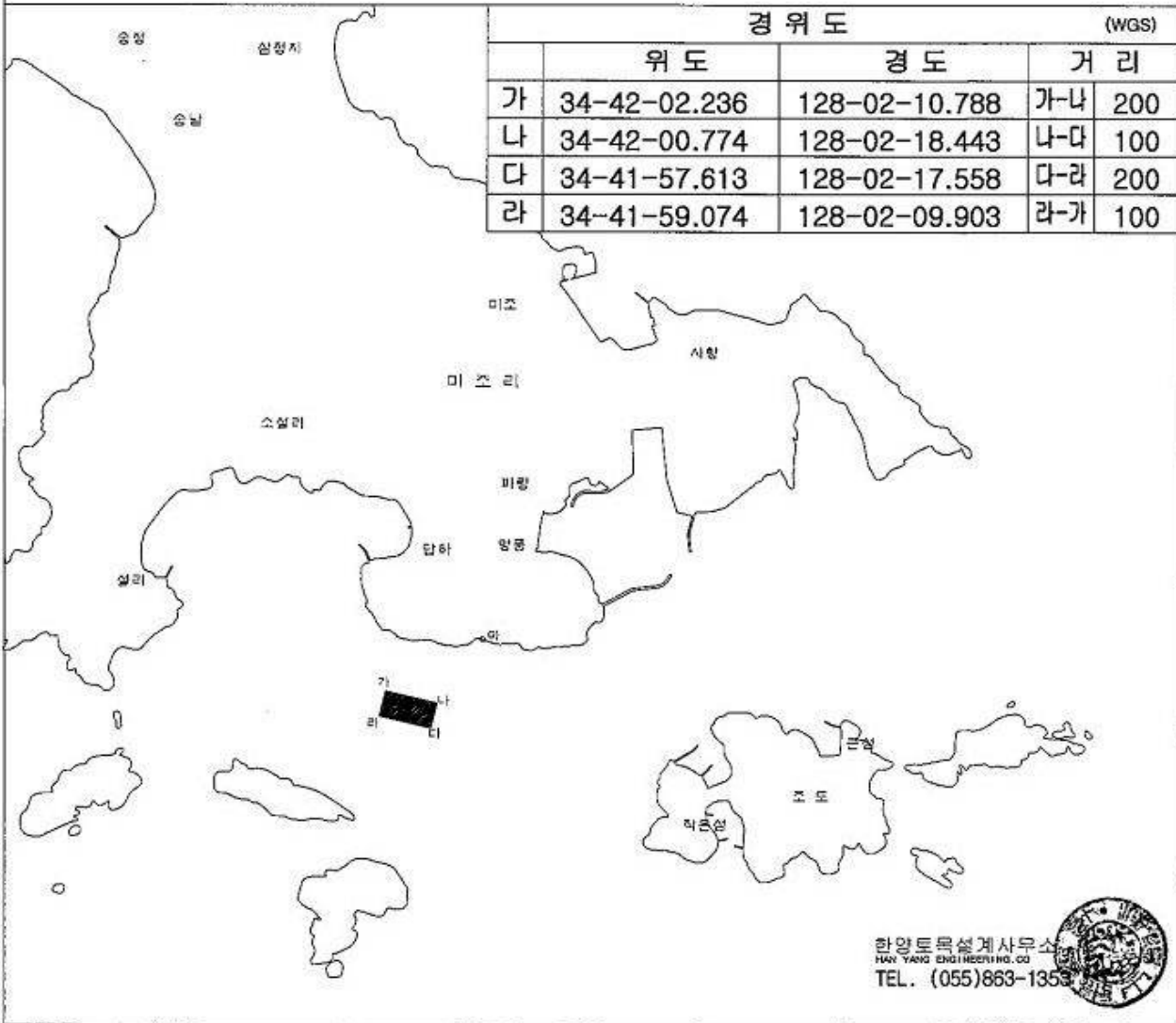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99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어류	미조 미조	20,000	2012.02.09 2022.02.08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답하이촌계외 1명	
남해양식 제332호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어류	미조 미조	30,000	2012.02.09 2022.02.08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4번길 17-10	한수만외 6명	

596호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 등 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가두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 (마) N34-42-09.08, E128-02-25.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sup>2</sup>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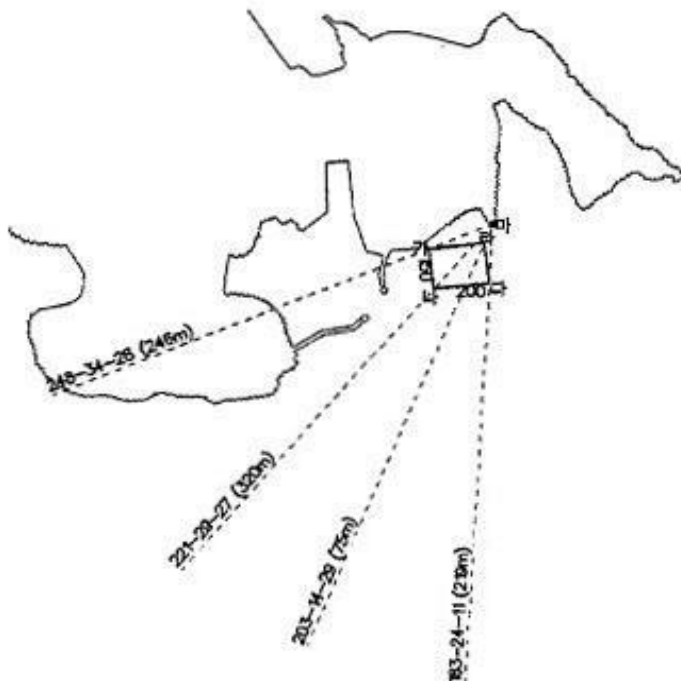
## 남해양식 어업면허 제 597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등양식 축적 :  $\frac{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가두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 시(군) 미조 읍,면,동 미조 리 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남해 시(군) 미조 읍,면,동 미조 리
  - 보조기점
  - (가): 248° 34' 246 미터의 점 (나): 221° 29' 320 미터의 점
  - (다): 183° 24' 219 미터의 점 (라): 203° 14' 75 미터의 점
  - \* 가, 나, 다, 라 각점의 좌표 아래표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 나, 다, 라 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0,000 m<sup>2</sup>



WGS

구분	X(N)	Y(E)
가	34-42-26.18	128-03-02.67
나	34-42-21.35	128-03-03.38
다	34-42-22.13	128-03-11.19
라	34-42-26.96	128-03-10.48
마	34-42-29.22	128-03-11.62



남해양식계사무소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2 - 225호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남해힐링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비 상승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해힐링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설명칭, 위치 등을 규정함(별표 1)
- 나. 관광·문화시설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원예예술촌 및 뮤지엄남해 & 동창선아트스튜디오(전시실), 작은영화관 입장료를 인상함(별표 2)
- 다. 영화관 목적 외 대관을 위한 작은영화관 대관(이용)료를 신설하고 뮤지엄남해 & 동창선아트스튜디오(캠핑장) 이용료를 인상함(별표 4)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3월 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5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전화 055-860-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스페이스 미조란 다음에 남해힐링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고
남해힐링센터	연면적 : 1,653㎡ (지하1층, 지상3층) 기계실, 소방설비실, 관리실, 공연장, 북카페, 휴게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78일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의2. 작은영화관 대관(이용)료

가.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유 료 입장시	비 고
	주간	야간 (영화관 휴무일)		
공연	45,000	5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10%) 별도

나.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설비	기준	요금	비고
냉·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1) 이용가능시간: 09:00~22:00

- 주간 : 09시~18시

- 야간 : 18시~22시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다.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튜디오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구분	비 성수기		성수기(7~8월) (물놀이장 운영기간)		비고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박2일 (4인기준)	45,000	50,000	50,000	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li> <li>•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li> </ul>

- 1) 이용가능 시간 : 14:00 ~ 익일 11:00
-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2. 4. .>

##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 1. 입장(관람)료

(단위 : 원)

시설 명칭	구 분	개 인			비 고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파독전시관		1,000			
<a href="#">원예예술촌</a>		<a href="#">6,000</a>	3,000	1,500	
이순신 영상관	개인 (군민)	3,000 (2,000)	2,000 (1,500)	1,500 (1,000)	
	단체 (군민)	2,000 (1,000)	1,000 (1,000)	800 (500)	
김만중문학관		무료	무료	무료	
<a href="#">뮤지엄남해&amp; 동창선아트스튜디오</a>	<a href="#">전시실</a>	<a href="#">5,000</a>	<a href="#">4,000</a>	<a href="#">2,000</a>	
	<a href="#">물놀이장</a>	<삭제>			
바래길 작은미술관		무료	무료	무료	
<a href="#">작은영화관</a>	<a href="#">2D</a>	<a href="#">6,000</a>	<a href="#">6,000</a>	<a href="#">6,000</a>	
	<a href="#">3D</a>	<a href="#">8,000</a>	<a href="#">8,000</a>	<a href="#">8,000</a>	

#### 가. 기준 연령

- 일 반 : 만 18세 이상
- 청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어린이 :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 (단, 물놀이장의 경우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한다)

나.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다.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치	비고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치	비고
힐링국민 여가캠핑장	생 략			힐링국민 여가캠핑장	현행과 같음		
독일문화 체험센터				독일문화 체험센터			
원예예술촌				원예예술촌			
이순신 순국공원				이순신 순국공원			
보물섬캠핑장				보물섬캠핑장			
서상 게스트하우스				서상 게스트하우스			
물미해안 전망대				물미해안 전망대			
설리 스카이워크				설리 스카이워크			
남해문화센터				남해문화센터			
남해생활문화센터				남해생활문화센터			
노도 문학의 섬				노도 문학의 섬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데이				뮤지엄남해& 동창선아트스데이			
바래길 작은미술관				바래길 작은미술관			
보물섬 레일파크				보물섬 레일파크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남해각, 남해각 전망공원 보행로				남해각, 남해각 전망공원 보행로			
스페이스 미조	스페이스 미조						
				남해힐링센터 <신설>	연면적 : 1,653㎡ (지하1층, 지상3층) 기계실, 소방설 비실, 관리실, 공 연장, 북카페, 휴 게음식점, 사무 실, 소매점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78일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관람)료(제6조 관련)						
1. 입장(관람)료						1. 입장(관람)료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시설 명칭		개 인			비고	구 분		개 인			비고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파독전시관		생략				파독전시관		현행과 같음				
원예예술촌		5,000	3,000	1,500		<u>원예예술촌</u>		<u>6,000</u>	3,000	1,500		
이순신 영상관		생략				이순신 영상관		현행과 같음				
김만중문학관		생략				김만중문학관		현행과 같음				
뮤지엄 남해& 동창선 아트스케이	전시실	2,000	1,500	1,000		뮤지엄 남해& 동창선 아트스케이	전시실	<u>5,000</u>	<u>4,000</u>	<u>2,000</u>		
	물놀이장	5,000	5,000	5,000			물놀이장	<u>&lt;삭제&gt;</u>				
바래길 작은미술관		생략				바래길 작은미술관		현행과 같음				
		<u>작은</u>						<u>2D</u>	<u>6,000</u>	<u>6,000</u>	<u>6,000</u>	
		<u>영화관</u>						<u>3D</u>	<u>8,000</u>	<u>8,000</u>	<u>8,000</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u>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u></p> <p>1. ~ 3. (생략)</p>	<p>[별표 4] <u>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u></p> <p>1. ~ 3. (현행과 같음)</p> <p><b>3의2. 작은영화관 대관(이용)료&lt;신설&gt;</b></p> <p>가.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평 일</th> <th rowspan="2">유 료 입 장 시</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주 간</th> <th>야 간 (영화관 휴무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 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입액의 20% 징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세 (10%) 별도</td> </tr> </tbody> </table> <p>나.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구 분</th> <th>사용설비</th> <th>기 준</th> <th>요 금</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냉 · 난 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냉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난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1) 이용가능시간: 09:00~2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 : 09시~18시</li> <li>- 야간 : 18시~22시</li> </ul> <p>2) 이용시간 초과 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초과 이용시간</th> <th>초과 이용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td> <td></td> </tr> </tbody> </table> <p>※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p> <p>※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 용료 기준으로 가산</p> <p>다.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p>	구 분	평 일		유 료 입 장 시	비 고	주 간	야 간 (영화관 휴무일)	공 연	45,000	5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 (10%) 별도	구 분	사용설비	기 준	요 금	비 고	냉 · 난 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구 분	평 일		유 료 입 장 시	비 고																																
	주 간	야 간 (영화관 휴무일)																																		
공 연	45,000	5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 (10%) 별도																																
구 분	사용설비	기 준	요 금	비 고																																
냉 · 난 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현행

4. ~ 5. (생략)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튜디오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구분	비 성수기		성수기 (7~8월) (물놀이장 운영기간)		비고
	주중 (일~목 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 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박2일 (4인 기준)	30,000	35,000	40,000	45,000	•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차량 5,000원 추가

-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이용시간	초과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7. (생략)

개정안

4. ~ 5. (현행과 같음)  
 6.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튜디오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구분	비 성수기		성수기 (7~8월) (물놀이장 운영기간)		비고
	주중 (일~목 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 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박2일 (4인 기준)	45,000	50,000	50,000	55,000	•종량제봉투 (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차량 5,000원 추가

-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이용시간	초과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이용료 부과

7.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22 - 253호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조례」

###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해군 건축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정 삭제(안 제7조).
-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 삭제(안 제31조).
- 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 중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35조).
- 라.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주기 규정 반영(안 제39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2년 3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93,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전화 055-860-3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하며, 검사주기” 를 “하며 최초 검사” 로, “시로 한다” 를 “시에 하되,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p> <p>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기능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u></p> <p>&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p> <p>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②  
(생 략)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2.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

3. (생 략)

④ ~ ⑥ (생 략)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신 설>

<신 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  
-----  
-- 하며 최초 검사-----시에 하되, 제25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2 - 254호

###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69-2번지 일원(두모~소량)
- 사 업 내 용 : 사면정비 L = 728m, B = 8m, A = 13,365㎡
-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사 업 기 간 : 2022. 1. ~ 2022. 12. 3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 후 이를 반영하여 도로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2. 2. 16. ~ 3. 2. (14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공고기간 내
- 제 출 방 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1호

##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 무 내 용
안전관리자 (재난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보건관리자 (재난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 안전 관련 학과 ○ 우대조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관리자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채용분야 직무내용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보건관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보건관리자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채용분야 직무내용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4. 채용 조건**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구 분	연봉액(천원)		보수	근무시간	비고
	상한액	하한액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55,731	39,582	하한액	주당 35시간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55,731	39,582	하한액	주당 35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개별 유선 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2. 21.~ 2022. 2. 23.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2022. 2. 24.(예정)
면접 시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022. 2. 25.(예정)	2022. 2. 28.(예정)

-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한 자료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이력서 기재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안전 및 보건관리자)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TF팀 (☎ 055-860-3622)